

3.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

건설교통부고시 제1999-351호 1999. 11. 15

(근거법령 : 건축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5항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(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)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'건축폐자재'라 함은 건축구조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부터 분쇄·가공된 재생골재가 50퍼센트 이상 포함된 재생자재로서 한국산업규격 "콘크리트용 재생골재"(KS F 2573)에서 정한 제1종 이상의 품질(제4조제2항의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이 20퍼센트 미만

인 경우에는 동 규격에서 정한 제2종 이상의 품질을 말한다)을 갖는 것을 말한다.

2. "골조공사"라 함은 기초, 기둥, 벽, 바닥, 보, 계단,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.

제4조(건축기준의 완화) ①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(이하 "허가권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, 다음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건축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건축 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	기준 완화 적용 범위
1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	5 퍼센트
20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	10 퍼센트
2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	15 퍼센트

③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 및 기초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“콘크리트용 재생골재”(KS F 2573)에서 정한 25밀리미터 이하의 제1종 재생굵은골재의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사용한 비율이 20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건축폐자재의 품질확인 등) 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

공사시공자는 건축폐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“콘크리트용 재생골재”(KD F 2573)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건축주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폐자재 사용확인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

(제1면)

① 건축주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		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		
② 설계자	성 명			면 허 번 호	제 호					
	사무소명			등 록 번 호	제 호			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		
③건축폐자 재공급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제 호					
	업 체 명			등 록 번 호	제 호			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		
④ 대지조건	대지위치									
	지 역			지 구						
	지 목			면 적	m ²					
건축물규모	건축면적	m ²	연 면 적	m ²		지 하 면 적	m ²			
	건 폐 율	%	주 용 도			부 속 용 도				
	층 수	지상 층, 지하 층		구 조						
⑤ 건축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	전체골조재 소요량 (굵은골재+기타)		톤							
	사용부위		주요구조부:			기타:				
	사용계획량	합 계	굵은골재		계		굵은골재		기타	
					1종	2종	1종	2종	1종	2종
			톤	톤	톤	톤	톤	톤	톤	톤
건축폐자재 사용증량비율		%	%		%	%	%	%	%	
⑥ 완화 적용내용	구 분	법정기준		완화적용 비율		완화적용내용				
	용 적 륜	%		%		%				
	건축물높이	m		m		m				
<p>건축법 제59조제3항·건축법시행령 제95조제6항·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건축주 (서명 또는 인)</p> <p>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p>										

<작성요령>

- ①, ②: 다수인 경우에는 ○○○의 ○인으로 기재하며, “외 ○인”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- ③: 건축폐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.
- ④: 여러 필자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,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.
- ⑤: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,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.
- ⑥: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법정기준과 완화를 요청하는 비율 및 완화적용내용을 기재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건축폐자재 사용 확인서

(제1면)

① 건축주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			
② 건축물 규모	건축물명칭								
	연면적		주용도						
	층수	지상 층, 지하 층	구조						
③ 공사 감리자	성명		면허번호	제 호					
	사무명		등록번호	제 호	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			
③ 건축폐자재 공급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제 호					
	업체명		등록번호	제 호	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			
⑤ 건축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	전체골재소요량 (굵은골재+기타)		톤						
	사용부위		주요구조부:	기타:					
	건축폐자재 사용계획량	합계	굵은골재	계		굵은골재		기타	
				1종	2종	1종	2종	1종	2종
	건축폐자재 사용비율	톤	톤	톤	톤	톤	톤	톤	톤
		톤	톤	톤	톤	톤	톤	톤	톤
		%	%	%	%	%	%	%	%
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확인자 공사감리자 (서명 또는 인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
참가서류	품질을 확인받은 서류 1부								

<작성요령>

①~③: 다수인 경우에는 ○○○의 ○인으로 기재하며, “외 ○인”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
④: 건축폐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원합니다.

⑤: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,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.

주택회보